



| | |
|--|---|
|  |  |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 신고하려는 대상품이 무엇인가요? |
| 세이프어스와 전화상담을 받는다. | 상담을 통하여 신고 대상 여부 및 형식별 적용범위를 판단한다. |
|  |  |
| 신고 대상품으로 확인되면 세이프어스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제품설명서 또는 관련도면을 준비한다. |
|  |  |
| 제작 및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평가! | 결연저항시험과 절지연속성시험을 실시 |
| 사업장 또는 설치장소로 방문하여 해당 설비의 제작 및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평가한다. |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한다. (필요시 전자파 적합성시험 실시) |
|  |  |
|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한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출한다. |
|  |  |
| 안전보건공단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한다. |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



안전 · 보건 분야

- 산업안전컨설팅(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위험성평가 컨설팅(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자율안전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안전검사 컨설팅(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산업안전용품 MRO(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직무스트레스 평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 전기안전시험(IEC-60204-1)

사업실적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서울광역본부**
산업용로봇, 혼합기,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밀링기, 드릴기) 등 580형식
- **부산광역본부**
연삭기, 연삭기 덮개, 연마기, 혼합기, 파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기), 컨베이어, 인쇄기 등 706형식
- **대구광역본부**
연삭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분쇄기, 파쇄기, 컨베이어, 공작기계(드릴기) 등 109형식
- **인천광역본부(인천, 경기)**
연삭기, 산업용로봇, 연마기, 혼합기, 분쇄기, 파쇄기, 식품가공용기계(혼합기, 파쇄기, 절단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공작기계(밀링기, 드릴기), 고정형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루타기) 등 2,548형식
- **광주광역본부**
연삭기, 혼합기, 분쇄기, 파쇄기, 고정형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등 384형식
- **대전광역본부**
연마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 공작기계(밀링기) 등 623형식

※ 위 실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컨설팅 실적임

안전한 일터! 건강한 미래!

SU지주 **SU세이프어스**

SU holdings Co., Ltd.

| | |
|------|--|
| 회사명 | (주)SU지주 |
| 브랜드 | 세이프어스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3층 (가산동, 대륭21차) |
| 연락처 | T. 02-567-7904 F. 02-567-7905 E. safety@safeus.co.kr |
| 홈페이지 | www.safeus.co.kr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자율안전확인신고로

해결하세요!



컨설팅 절차

“왜?”

세이프어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 ✓ 간단한 절차
- ✓ 시간절약
- ✓ 정확한 컨설팅

| | |
|---|---|
| [직접 신고] | [세이프어스 의뢰] |
| [대상품 및 적용 범위 판단] | |
|  |  |
| 관련 법규 등을 직접 해석하여 신고 대상여부 및 적용범위를 판단 | 1,300건 이상의 신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상담 실시 |
| [처리절차] | |
|  |  |
| 서류작성 → 전기시험 → 신고서제출 → 신고완료 | 컨설팅 의뢰 → 현장방문 → 신고완료 |
| [준비서류] | |
|  |  |
| 사업자등록증,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전기안전시험성적서, 제품의 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도면 |
| [시간] | |
|  |  |
| 평균 20일~50일 이상 [제출서류 보완요청 시 최대 30일 연장] | 시간 단축! 20일 이내 |
| 현장 방문일로부터 최대 20일 이내 [신고처리란 15일 포함] | |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경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제도 (13.03.01일 확대시행)

Tip. '자율' 단어의 해석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율적으로(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뜻으로 신고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반드시 자율 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함.

의무자



• 신고 의무자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2.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3. 자율안전확인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Tip.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는 없음. 다만,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실시해야 함.

처리절차



제품시험 및 성능 확인 ----- 제조자(수입자)또는 시험기관

자율안전확인신고 ----- 제조자(수입자) ▶ 신고수리기관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발급 ----- 신고수리기관 ▶ 제조자(수입자)

※ 신고수리기관: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소재지의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벌칙 및 과태료



| 위반행위 | 벌칙 |
|---|--------------------------|
|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받은 경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171조]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 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자율안전확인대상별)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 250 | 500 |
| 법 제16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 |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 30 | 150 | 3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대상 및 적용범위



| 대상 | 적용범위 |
|---------------------------------------|--|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플레이터(액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용기회전형 혼합기, 기류교반형 혼합기, 식품용 및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것은 제외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식품용 및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 |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개는 것. 다만, 가정용 및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가정용 및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용기회전형 혼합기, 가정용 및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가정용 및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
| 컨베이어 |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스크류)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기 |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 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수수료 및 제출서류



| 대상 | 적용범위 |
|---|--|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동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기계, 모떼기기계 | 가. 동근톱기계: 고정된 동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패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갈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돌려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

1. 위험성평가 결과서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또는 자체 시험·검사 결과서 (자체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검사 결과서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공인시험기관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 나.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 다.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관련법규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 신고)부터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부터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수거 · 파기명령)까지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 위험기계 ·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신고의 면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제84조제3항 안전인증(5마크)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 · 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서류의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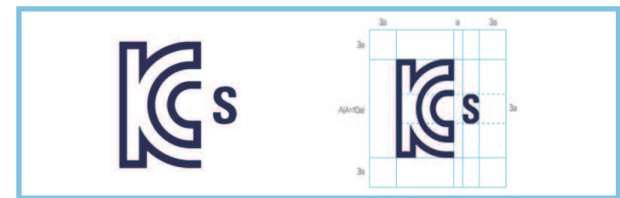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표시방법



•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1. 표시



2. 표시 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자율안전확인신고 추가표시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는 제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 안전확인 표시)에 따른 표시(㉠)외에 위험기계 ·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추가 표시사항을 표시한다. ※ 컨설팅 의뢰시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명판)을 제공해드립니다.